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25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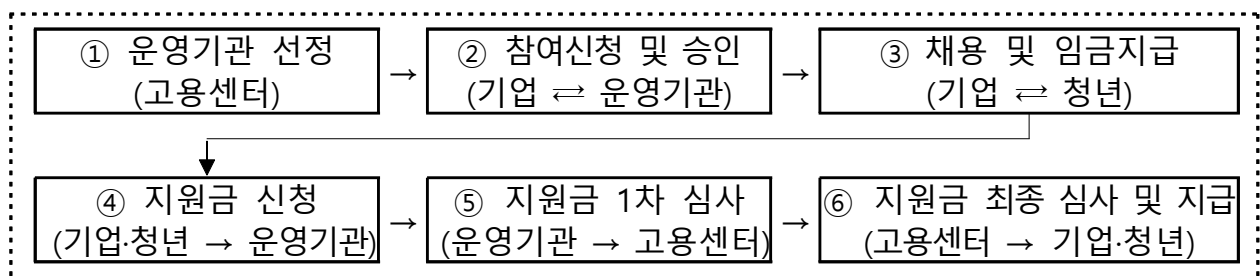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아래 사업개요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업내용은 「고용24」에 추후 게시될 사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함
 - (유형 I)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II)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 I)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유형 II)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유형 I)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II)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자에게는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 (추진체계) 고용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2 사업위탁 관련 주요내용

- 위탁규모 : 총 10만명 (유형 I 5만5천명 · 유형 II 4만5천명)
 - * 단, 전체 위탁규모의 90%에 대해 우선 배정한 후, 운영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잔여 10% 추가 배정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채용일로 부터 24개월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완료시까지
- 위탁내용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 · 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 · 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 · 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 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위탁 사업지역 : 위탁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 관할지역
- 위탁운영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별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지급

※ 위탁운영비 지급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되 추후 확정 예정임

- (지급기준)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함

[유형 I]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기업지원금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6개월분) 지원금 지급시 20만원

[유형II]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기업지원금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6개월분) 지원금 지급시 20만원

*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8개월 근속하여 1차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시 10만원

- (지급방식) '25년 상반기에 1회, '26년 상반기에 1회 위탁사업비의 50%씩 분할 지급하되, 사업 종료 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25년도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이후 '25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서 제외된 경우,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취소 혹은 위탁운영약정 해지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③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

* 다만, 주된 사업자는 사업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함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24.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② '24.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신청규모** : 운영기관별 최소 500명* 이상 위탁신청

※ 신청 운영기관은 유형 I·II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총합 인원으로 신청함
(단, 총 위탁규모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음)

*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사업장 수, 청년인구 수) 및 '24년 사업 참여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500명 미만으로 위탁 가능

○ **기타사항**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A등급 기관은 우선 선정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B등급 기관은 심사 시 5점 이내 범위에 가점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선정 제한

○ **제출서류** : ①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0부 또는 ②신청서 원본 1부 및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8개 대표(지)청은 제출서류 형식을 위 ① 또는 ② 중에서 선택하여, 지청에도 같은 형식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안내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광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 12. 20.(금) 09:00 ~ '25. 1. 3.(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함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와 위탁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

5 선정절차

- (심사)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게재 병행
- (위탁약정 체결) 고용센터-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6 문의처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붙임 고용센터 문의처 참고

☐ (단 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컨소시엄)

기 관 현 황 (주사업자)	기 관 명		법 인 등 기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F A X)		관 리 책 임 자 (E - m a i l)	
	직 업 소 개 업 신고(등록) 여부	☐ 무료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기 관 유 형	☐ 비영리 ☐ 영리		
기 관 현 황 (보조사업자) *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기 관 명		법 인 등 기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F A X)		관 리 책 임 자 (E - m a i l)	
	컨 소 시 업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비 율 (위탁비 기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등)
---------------	---

[첨부 1-1]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 각각 작성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 청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요 사 업 내 용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분 야 별 매 출 액					
- ○ ○ 분 야					
- ○ ○ 분 야					
자 기 자 본 비 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 력	근무경 력	직위	담당업 무	자격증	정규직* 여부
	총괄 책임자								
	등록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목표

※ '25년도 목표인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 유형 I · II를 개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총합 인원으로 신청함
(단, 총 위탁규모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음)

*위탁규모 : 총 10만명 (유형 I 5만5천명 · 유형 II 4만5천)

2. 사업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홍보, 참여자(기업,청년) 발굴·모집, 상담·지원, 사업 신청 접수·적격 여부 심사, 지원금 신청·지급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기업 발굴·모집·확보 방안, 적정 상담 등 채용지원,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구 분 \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 인건비 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 경비 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 계			

※ <총사업예산> (유형 I) 목표 채용인원 × 20만원, (유형 II) 목표 채용인원 × 30만원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1.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4년	■ ■
2023년	■ ■
2022년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4-2.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분	사업 수행 전문성
	■ ■
	■ ■

※ 해당 분야(산업 등)의 구인처 보유·관리 현황 등, 사업운영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 ○ 기 관 심 사 표

기 관 명			
총 직원수/ 전담직원수		신청인원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기업·청년)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인적자원 운용 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 (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24년 운영기관 평가 결과 (가점 5점)	‘24년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은 5점 이내 가점	
총 계		

평가자: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참여자 모집 실적, 취업률 등)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문인력 보유정도 등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자 발굴·모집의 전문성, 상담 및 관철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 매체 등) 활용, IT 분야 맞춤 홍보 전략,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주기별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처리, IT직무 재직 여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청년의 디지털 역량 향상 촉진 등 참여자 관리 방안
인적자원 운용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의 적정성,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관기관 과의 협력(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협업,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비 고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A등급 기관 : 우선선정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 : 5점 이내 가점 부여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D등급 기관 : 선정 제한	

붙임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	--------------------------

지방청	고용센터	전화번호	비고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02-2004-7394,7370	
	서초고용센터	02-580-4972, 4989, 4940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09 4714, 4723, 4708, 4703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434 8486, 8544, 8575,8932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3496, 6025, 6011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156, 2260, 2402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61, 1844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371, 9380, 9385, 9393,9249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032-460-4641, 4691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731	
	인천서부고용센터	032-540-2050	
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032-310-8843, 8852	
	김포고용센터	031-999-0939, 0941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893, 0975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031-920-3928, 3960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031-231-7835, 7855, 7858, 7938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031-739-4902, 4907, 4932, 4942, 4946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031-463-3827 3801, 3805, 0768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031-412-6942, 6645, 6647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031-646-1264~5, 1268, 1242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033-250-1924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033-610-1990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033-769-0960, 0967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033-550-8645	
영월지청	영월고용센터	033-371-6254	

지방청	고용센터	전화번호	비고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051-860-2072, 2101, 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247, 7286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986 9952, 9970, 9945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052-228-3913, 3918, 1925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055-330-6435, 6436	
	양산고용센터	055-379-2431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055-760-6753~5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055-650-1811~3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053-667-6032 6034, 6037, 678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450, 6460, 6464, 6466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054-280-3050, 3052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054-440-3361, 3364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054-639-1142, 1139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054-851-8062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062-609-8648~50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063-270-9202, 9215~9217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063-840-6507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063-450-0634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061-280-0541~42, 0552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061-720-9150, 9161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042-480-6012~16, 6018~6019, 6029, 6447	
	세종고용센터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043-229-0715, 0717, 0719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041-620-7443~4, 7446, 7448, 7497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043-850-4035	
	제천고용센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59	
서산지청	서산고용센터	041-661-5664	